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9 선고 2019가단1348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9. 9.

주 문

1. 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,387,258원 및 그 중 313,440,610원에 대하여,
나. 피고 주식회사 B, 피고 D은 연대하여 233,735,632원 및 그 중 193,104,360원에 대하여
각 2018. 7. 1.부터 2019. 7. 2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

부분 중 법정이율을 연 12%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신봉메

별지